통 지 서

일자 : 201__년 __월 __일

수신1 : (가칭)아라동1단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, (가칭)아라동2단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(위탁자의 지위)
수신2 : 아시아신탁 주식회사(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수임자의 지위)

제목 : 업무대행용역계약상 권리의 양도 통지

이 통지서는, 본인이 귀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(이하 **"업무대행용역계약"**)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할 모든 권리(이하 **"양도대상채권"**)의 양도와 관련됩니다.

주식회사(이하 문맥에 따라 **"차주"** 또는 **"채무자"**)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416-1 일원에서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416-1번지 일원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,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416-1번지 일원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(이하 **"본건 사업"**)과 관련하여,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,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(이하 문맥에 따라 **"대주"** 또는 **"담보권자"**) 등과 2018년 7월 28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(₩5,000,000,000)의 대출약정(이하 **"대출약정"**) 및 양도대상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(이하 **"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"**)을 체결하였습니다.

당사는 귀사에게 다음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.

1. 당사는 대출약정과 관련한 차주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가질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계약상의 모든 채권(업무대행수수료채권를 포함하며,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)을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양도(담보한도액: 대출약정금 금 오십억원(₩5,000,000,000)의 130%)하였습니다. 그러나, 업무대행용역계약상의 채무는 여전히 당사가 부담하고 담보권자는 귀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2. 귀사는, 본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을 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지정하는 계좌[[신한은행], 예금주: ㈜데일리펀딩대부, 계좌번호:[140-011-870423]]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220111-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대표이사 이